
저자 (Authors)	김교성
출처 (Sourc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14.6, 61-89(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23322
APA Style	김교성 (2014). 사회적 타살과 불평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89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165.***.103.13 2019/11/22 17: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사회적 타살과 불평등

김 교 성 (중앙대학교)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돈, 다른 사람들의 노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Franklin Delano Roosevelt, 1936).

I. 서론

살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고 어려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적 보호의 경계 밖에서, 삶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개인적 책임을 강요받은 사람들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자신과 부모, 형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홀로 혹은 함께 참담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⁸⁾ 모두의 책임이 공존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며, 사회적 폭력에 기인하기에, '사회적 타살'이라 명한다.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에 몰두하고 있다.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전달체계의 개선을 약속하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각지대 문제를 의제화 하고, 인력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분명 개선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대한 준비를 통해 사회적 타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⁹⁾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 뒤에 감춰져 있다. 비정상적인 분배구조에 대한 개선과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복지가 확대되어도, 사회적 타살의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Stiglitz(2012/13: 68)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Price of Inequality)"에서, 미국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을 지목

8) 매주 4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2014년 1,088,890원) 보다 약간 높은 1,250,000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44세)가 있다고 가정하자. 두 자녀(11세와 9세)를 둔 가장이며, 중소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41세)도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며 500,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정부는 남편의 임금에서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각각 4.5%, 2.9%, 0.55%) 명목으로 99,000원을 징수한다. 방이 두 개 딸린 집의 월세와 광열수도비로 각각 290,000원과 116,000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245,000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4인 가족의 식비(605,000원), 의류비(67,000원), 교통·통신비(153,000원) 등의 기본 생활비와 돌봄교실 비용(75,000원), 아내와 아이들의 약값(68,000원) 등을 지불하면 277,000원이 남는다. 이후 대출금 이자(84,000원), 부모님과 남편의 용돈(91,000원), 아이들 놀이 비용(31,000원), 잡비(46,000원) 등을 충당하면, 부부의 손에는 고작 25,000원이 남게 된다(2014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개 비목별 금액 참고). 문화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혹은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실직하면,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9) 우선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통과된 기초연금법을 보면, 수급 대상이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었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이후부터 진행된 규제완화, 금융화, 부자감세, 조세구조의 누진성 축소로 인해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광경이 목격되며, 핵심적인 변화의 시발점은 IMF 외환위기라고 판단된다.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치적을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조기 가입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아무런 대비 없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가입 1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김승식, 2013: 20). 이후 우리의 삶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처방들은 자본축적에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단기간에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아픔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지주형, 2013).

사회적 타살의 문제는 빈곤, 불평등, 여성, 노동, 정신보건,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고,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여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소득 불평등이라는 동일한 근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Wilkinson & Peckett, 2010; 김교성, 2013).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의 변화 추이를 소득 불평등 실태와 함께 진단하고, 두 변수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후 낙수효과의 기만과 정부의 묵인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불평등 현상을 조망하고, 이른바 숨겨진 불평등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정부의 역할과 복지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대안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글을 작성하며 많은 연구자와 저술의 도움을 받았다. 이 글은 미국 사회의 경제와 빈곤, 복지와 불평등에 관한 그들의 탁월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핵심적인 주장의 프레임을 우리 사회로 가져와 검증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가능할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 많이 닮아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II. 사회적 타살과 불평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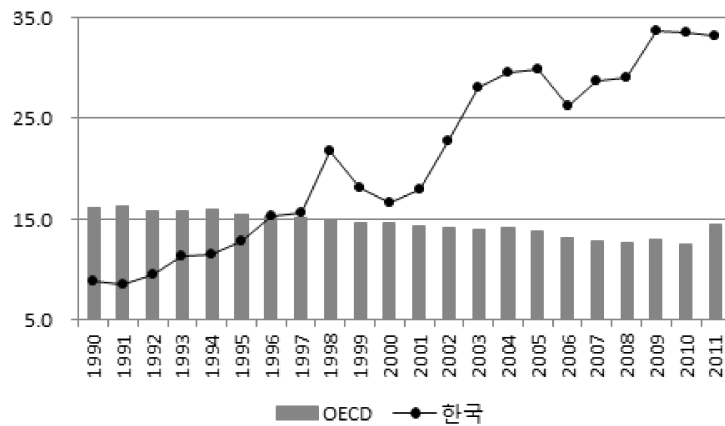
논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타살과 소득 불평등 수준 간 관계를 규명한다. 분석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과 소득 10분위 배율 간 상관관계 수치를 활용하며, 기간은 1990년부터 자료수집이 가능한 가장 최근까지로 한정한다. 우리 사회가 세계화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이후부터 변화를 관찰하고, 전후시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 IMF 외환위기의 중요성도 검증할 수 있다.

우선 자살률 추이부터 살펴보자. 대체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로 측정된다. 2011년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평균(14.4명)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¹⁰⁾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수치는 폭증하였다. 사회적 규범의 이완과 불일치로 인한 아노미적 자살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감소한 수치는 2000년대 들어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 이후 30.0명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 폴란드 등의 일부 국가에서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지 우리나라

10)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OECD 평균 수치는 13.1%로 크게 감소한다.

라에서만 정반대 현상이 목격되며, 증가 속도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81.8명으로 OECD 평균의 2.6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김승식, 2013: 317).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반인권적 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조사보고서”는 매 2년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충동과 원인에 관한 응답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7.2% 수준이며,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6.2%), ‘가정불화’(15.6%), ‘외로움과 고독’(14.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과 2012년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자살충동(7.7%→9.2%), 경제적 어려움(38.8%→39.5%) 항목에 대한 선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살 현상이 빈곤, 사회적 배제, 불평등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결과이다.



<그림 1>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추이
자료 : OECD (2013)

<표 1> 연도별 자살충동 여부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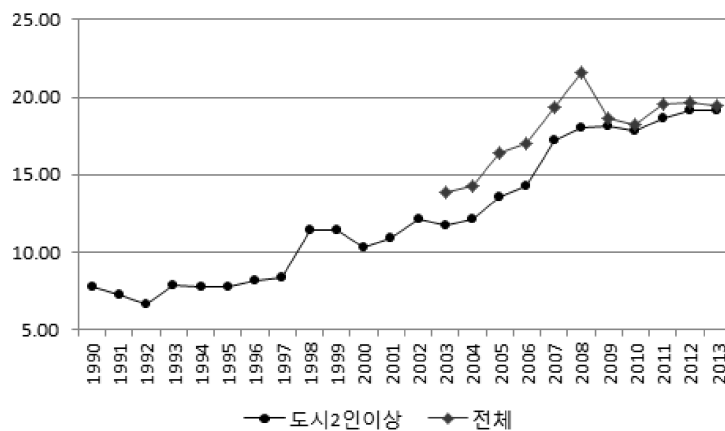
	자살충동 여부	원인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과 고독
2008	7.2	36.2	15.6	14.4
2010	7.7	38.8	15.1	12.9
2012	9.2	39.5	13.6	13.0

자료 : 통계청 (2012, 2010, 2008)

다음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에는 지니계수, 소득 10분위 배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수지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의 배율을 산정하였다.¹¹⁾ 아래의 <그림 2>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11) 이 자료는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계조사에 포함된 대상이 2인 이상의 도시 근로자 가구로 한정되어 있다.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3년부터 전국의 1인 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표본 가구의 수가 1만 가구에 불과하여, 세부적인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최고 부유층의 소득과 생활조건 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며, 이주민(immigrants)에 대한 정보도 누락되어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장소득에 기초한 10분위 배율은 나름 안정적(?)인 수준(6.63~8.13배)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임금수준의 향상이나 임금격차의 축소 등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신광영(2013: 43-44)은 '정치적 민주화'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부정되었던 노동삼권이 인정되고,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파업이 합법화 되면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고 불평등 수준은 악화되어,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분배구조의 변화를 추동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10분위 배율은 11.45배로 급속하게 확대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상실되거나 축소되었고, 국가의 복지체계는 일부 확대되었지만,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전환되어 분배구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소득 10분위 배율은 2005년 13.53배, 2010년 17.81배로 크게 확대 되더니, 2013년에는 무려 19.10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 양극화'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분위별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¹²⁾ 특히 여성과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2~3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빈곤 현상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부록의 <그림 1>참고).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데 있다(신광영, 201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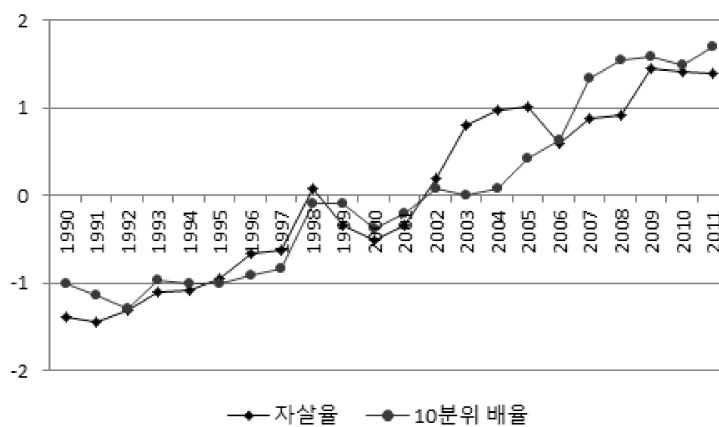
<그림 2> 소득 10분위 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이제 두 변수 간 관련성을 규명해 보자. 우선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타살과 경제적 불평등 간 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찰이나 면접이 불가능한 자살 연구의 특성 상, 선행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지표를 분석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장지연·신동균, 2010; 신동준, 2012; 반정호, 2011)를 진행하거나, 광역시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간 비교 연구(김민영 외, 2011; 노용환, 2008)를

12) 상대적 빈곤율(2인 이상의 도시가구, 가처분 소득 기준)은 1990년 7.1%에서 2000년 9.2%, 2010년 12.5%까지 상승하여 지속적인 악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니계수도 1990년 0.256에서 2000년 0.266, 2010년 0.289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득 5분위 배율도 1990년 3.72배에서 2000년 4.05배, 2010년 4.82배까지 확대되고 있다(김교성, 2013: 36-37).

수행하고 있다.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윤우석, 2011; 은희수, 2005)을 시도하는가 하면, 자살현상이 아닌 자살충동 혹은 자살시도 등의 대리변수(proxy measure)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특성, 경제적 상태 간 분석을 실시한 연구도 존재한다(우혜경·조형태, 2013; 노용환, 2007). 결과를 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불평등(신동준, 2012), 소득양극화(장지연·신동균, 2010), 소득격차(윤우석, 2011), 임금격차(반정호, 2011), 소득 5분위, 소득 10분위, 지니계수, 가계부실 지수(은희수, 2005), 빈곤, 빈곤의 동태(dynamics)(우혜경·조형태, 2013), 경제적 위기(노용환, 2007) 등이 자살률 혹은 자살충동을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차이에 주목한 은희수(2005)에 따르면, 이전까지 자살률과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던 소득분배 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유의미한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변화된 사회구조의 영향력이 확인된 셈이다.

아래의 <그림 3>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각 변수의 표준화 수치(standardized value)를 활용하였다. 동반 상승하는 유사 궤적을 보면, 두 변수 간 밀접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의 계수($r = 0.928$)를 통해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소득 5분위($r = 0.908$)나 지니계수($r = 0.874$)를 활용해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사회적 타살 현상과 소득 불평등 수준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타살 혹은 생계형 자살 현상을 목격하면서, 불평등 수준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자살률과 소득 10분위 배율
 자료 : OECD (2013), 통계청 (각년도)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저출산율과 높은 범죄율 등 나쁜 수치들이 자살률과 경쟁하고 있으며, 여러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범죄건수($r = 0.832$), 강력범죄 건수($r = 0.889$)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합계출산율($r = -0.724$)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부록의 <그림 2, 3> 참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고, 출산율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병리 현상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이미 Wilkinson & Pickett(2010)의 연구결과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다.¹³⁾ 소득 불평등은 독립적인 사회문제가

13) 그들은 소득 불평등이 한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제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신

아니며, 폭력과 살인, 강력범죄, 자살 등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불평등 수준의 악화는 의료와 건강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부와 빈곤의 세대 간 이전과 불평등 구조의 영속화 혹은 고착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한 사회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시 그것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 또한 사회 구성원이 모두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김교성, 2013: 40). 중국에는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훼손, 개인과 조직에 대한 신뢰성 하락,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 등의 대가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Stiglitz, 2012).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Ⅲ. 왜 불평등 수준은 악화되는가?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¹⁴⁾ 발전국가 시기부터 빈곤을 감소와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상은, 2006).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의 규모는, 최근 성장의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⁵⁾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에 진입하였고, 15년이 지난 2010년에 2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는— 불평등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답을 구해보자.

1. 낙수효과의 기만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발전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를 이야기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돈을 몰아주면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부양되며, 성장이 가속화되어 전체적인 부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확산되어 소득격차 혹은 불평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이론이다. 국부의 증대를 확대시키기 위해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이다. 과거 우리 정부도, '선 성장 후 분배'의 기치 하에, 경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사회적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축소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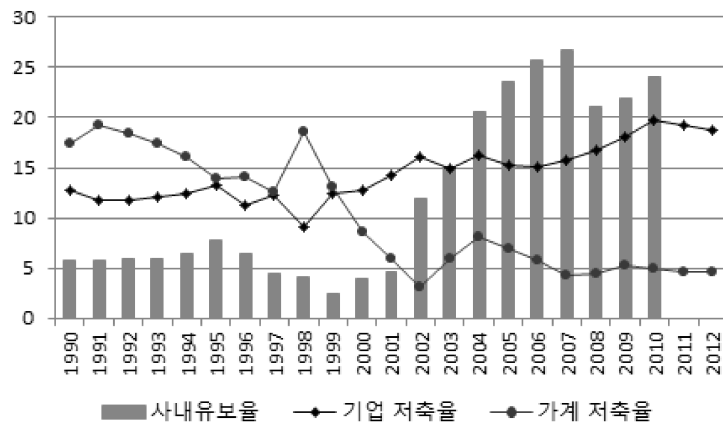
다수의 이론가들이 이 이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Bauman, 2013; Stiglitz, 2012; Hacker & Pierson, 2010). 과거 20년의 경험에 비추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현재 약 213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8년의 171조에 비해 약 25%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의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율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10대 대기업 상장사 평균 사내유보율

리수준, 정신질환(약물남용과 알코올 중독 포함),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비만, 아동의 학업성취도, 심대 임신, 살인, 재산자 비율, 사회적 이동성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제 지표를 구성하여, 불평등 수준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Wilkinson & Pickett, 2010: 20-22; 36-37; 김교성, 2013: 40 재인용).

14) 그러나 보편적 해결책은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5) 성장률의 감소는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설명이 더욱 논리적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평한 자원 배분에 관한 정치적 요구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상존하면서,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 1,442%에 이르며, 현금성 자산도 약 123조 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¹⁶⁾ 현금성 자산은 2006년에 비해 약 3.5배 정도 증가한 것이며,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금액이 금고에 쌓여있다는 의미이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222-228). 아래의 <그림 4>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자산총계로 나누어 사내유보율을 산정한 것이다. 1990~2001년에는 대체로 약 5.0% 내외의 사내유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유보율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⁷⁾ 사내 유보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저축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11.7~12.8% 수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률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 최고 수준(19.7%)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의 수치를 압도하던 가계의 저축률(14.0~18.4%)은 2000년대 한자리수로 추락하더니, 2005년 이후 5.0% 대에 정체되어 있다. 본래 가계는 저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기업은 그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야 한다. 반대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지나친 기업 저축율의 증가로 인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박종규, 20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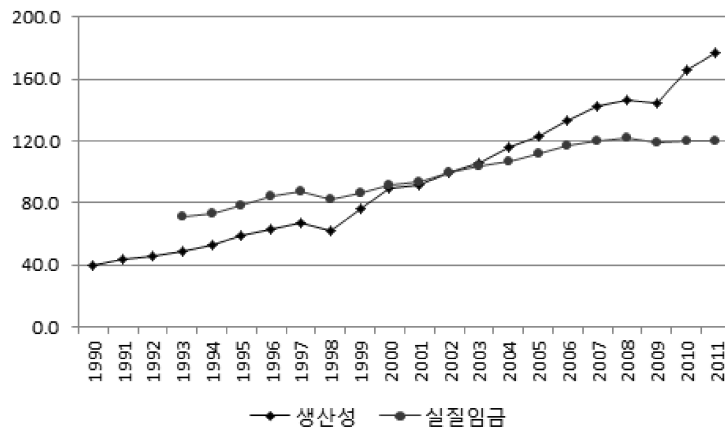
<그림 4> 기업의 사내유보율과 기업 저축률 및 가계 저축률 추이
 자료 : 김상헌 (2011); 한국은행 (각년도)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낙수효과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다. 기업의 이익과 저축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 저축률은 추락하는 현상을 목격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응분의 보수를 올바르게 지급하고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피용자의 보수를 조작화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두 번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2012년의 분배율(59.7%)은 IMF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61.4%)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소 축소된 분배율 수치를 지적하며, —경제성장 규모나 기업의 수익에 비해—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신광영, 2013: 87; 여경훈, 2012: 130).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산정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그 수준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16) 이 수치는 10대 기업의 전체 계열사(692개) 중 단지 8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추계한 것이다.
 17) 1990년부터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금 5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보유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대상 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확대(100억 이상, 1994년)와 세율에 대한 축소(15%, 1993년) 등의 조정을 거쳐 2001년 12월 완전 폐지되었다(김상헌, 2011: 7-8).

(김승식, 2014: 41-43).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비중의 추이를 관찰하였다. 두 변수의 2002년 값을 100.0으로 전치하고 각 년도의 수치를 계산한 결과, 2012년의 실질임금 수준(120.4)은 1993년(71.2)에 비해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¹⁸⁾ 그러나 2012년의 노동생산성 지수(177.4)는 1993년(48.5)에 비해 약 3.6배 이상 증가하여, 두 지표 간 격차가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나 임금억제 등의 노동비용 삭감을 통해 경영 수익을 창출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경훈(2012: 128-129)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임금의 생산성 탄력성을 측정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실질임금의 생산성 탄력성은 0.76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생산성이 1% 증가하는 동안 실질임금은 0.76%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1981~1997년 0.97 수준을 유지하던 생산성 탄력성은 1998~2010년 0.59로 급락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된 박종규(2014a)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는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증가율, 소비자물가와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을 비교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19.4%, 17.4%)은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21.0%, 17.4%)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관찰되는 양자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하락(-2.3%)하면서,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상승률로 인해 경제성장의 혜택은 기업에 집중되고, 상승하는 물가와 함께, 노동자의 삶은 더욱 황폐해 지고 있다.



<그림 5> 생산성과 실질임금 수준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US Dept. of Labor (2012)

18) 생산성 지수는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산출하는 국제노동비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제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제조업 분야의 총 생산성 지수인데, 시간당 생산성 혹은 1인당 생산성 지수로 대체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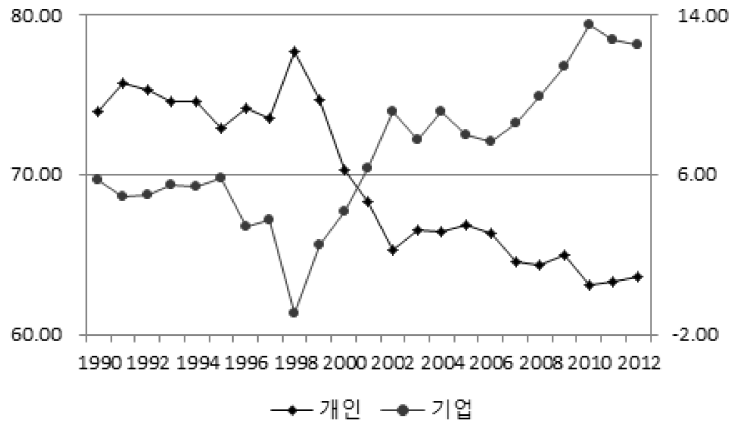
<표 2> 실질임금, 명목임금, 소비자물가,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률

	(단위: %)		
	1997-2002	2002-2007	2007-2012
명목임금 상승률	40.2	36.1	12.4
소비자물가 상승률	17.5	15.8	14.5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21.0	17.4	9.8
실질임금 상승률	19.4	17.6	-2.3

출처 : 박종규 (2014b: 12)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비교해 보자. 국민소득의 기업부분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수익에서 각종 비용과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며, 가계부분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피용자 보수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김승식, 2013: 33). 아래의 <그림 6>은 국민소득 대비 기업과 개인의 소득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GNI deflator로 실질화). 199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비중은 각각 5.0%와 70.0% 중반 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외환위기 시기, 기업소득은 급감하고 개인소득은 급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8년부터 기업소득은 증가 추세로 돌아선 반면, 개인소득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추락하고 있다. 이를 증가율로 비교하면, 증감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1990~1997년 동안 기업(1.33%)과 개인(53.60%) 중 개인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2000년 이후 역전되는데, 2000~2006년과 2007~2012년 기간 기업의 소득 증가율(129.59%, 90.75%)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개인의 증가율(18.04%, 12.32%)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기업소득은 증가했지만, 개인의 소득 비중은 감소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국가경제와 가계경제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97년 211조에 불과하던 가계채무 총액이 2013년 1,021조에 육박하여 무려 4.8배나 증가하였다. 가계의 채무 상환비율은 19.5%(2012년)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7%)은 상위 20% 가구(103.2%)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실질소득의 40%가 넘는 취약가구의 비중이 11.8%에 이르며, 원리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구의 비중도 70.2%에 이르고 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156-163). 우리 경제는 물론 개인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큰 허들이 되고 말았다.



<그림 6> 기업과 개인의 소득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표 3> 기업과 개인의 소득 증가율 변화

	(단위 : %)		
	1990-1997	2000-2006	2007-2012
기업	1.33	129.59	90.75
개인	53.60	18.04	1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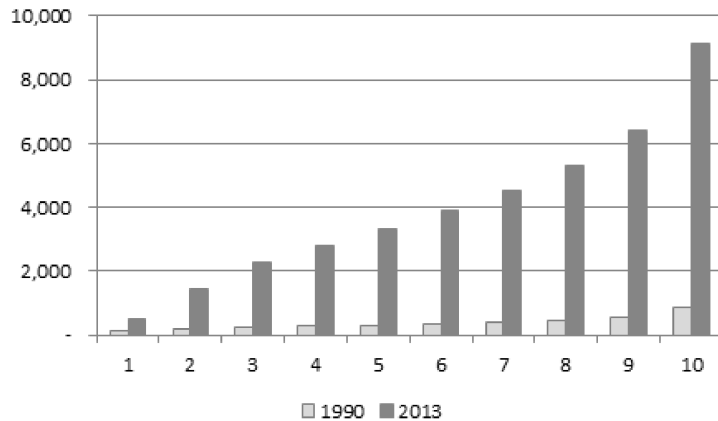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

경제성장의 열매는 정부에게는 세금으로, 기업에게는 이윤으로,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으로 고루 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은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와 분담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저축액을 쌓아 놓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며, 사회적 시민으로써의 책임은 모른척하고 있다. 직업창출이나 고용에는 인색하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에 집중하며 비용 감소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장의 낙수효과는 단지 수사에 불과하며, 불평등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2. 숨겨진 불평등(hidden inequality)

낙수효과의 실종으로, 기업은 높은 사내유보율과 저축률을 자랑하고, 가계는 낮은 임금과 저축률, 높은 부채 비율로 힘들어 하고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안정과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성장의 과실은 온전히 기업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 일부 재벌기업과 상류층에게 놀라운 정도의 소득집중 현상이 실현되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득 10분위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비교해 보자(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우선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3%(1990년)에서 1.21%(2013년)로 크게 축소하였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소득의 점유율도 감소하는 추세(5.28%→3.69%)이다. 그러나 소득 10분위의 소득 비중은 22.20%에서 23.02%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양극화의 심화'라고 표현할 만큼 소득집중도가 큰 편은 아니다. 소득격차의 악화(7.7배→19.1배)에 비해, 소득 점유율의 차이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평균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지난 23년간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약 3.4배 가량 증가하였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증가율도 6.3배에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 10분위 가구의 소득은 약 9.5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결과는 소득 10분위 가구가 막대한 소득을 확대시키는 동안, 1분위 가구는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류층이 차지한 엄청난 부가 저소득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확인되는 순간이다(Hacker & Pierso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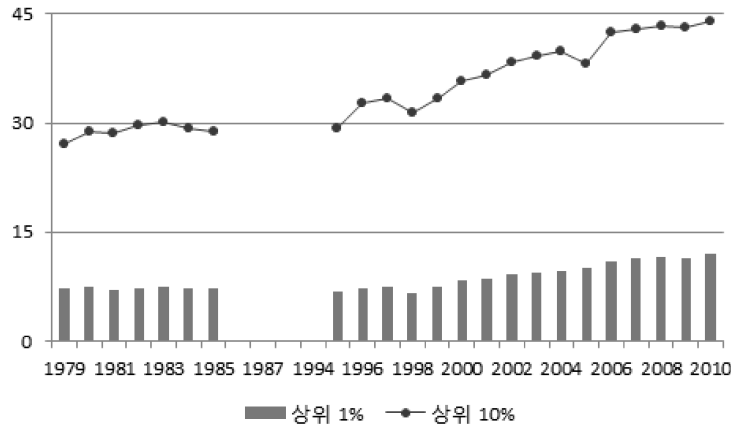
<그림 7> 소득 분위별 소득 변화, 1990~2013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그러나 앞선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주를 단일 기준(예를 들어 2014년 전국단위 소득 10분위 기준 (총)소득 월 1,050만원 이상)로 묶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top coding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상위 계층의 소득과 재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증거 하기는 불가능하다(Hacker & Pierson, 2010/12: 29). 2000년대 초반부터 Piketty(2003)와 Piketty & Saez(2003)가 시도했던 세금납부 관련 소득신고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상위 1%, 0.1% 혹은 0.01%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의 경향은 영국(Atkinson, 2005), 캐나다(Saez & Veall, 2005), 스웨덴(Roine & Waldenstrom, 2008), 일본(Moriguchi & Saez, 2008) 등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김낙년(2012)은 1979~1985년과 1995~2010년 등 제한된 시기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위 1%의 총소득 점유 비중은 외환위기 전후 7%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11.93%에 이르고 있다. 분석의 범위를 상위 10분위까지 확대해 보면, 2010년 기준 총소득 점유율은 무려 42.4%에 달해, 통계청 자료에 기초한 분석의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¹⁹⁾ 특히 외환위기 이전 30%대 초반에 머무르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 소득집중도의 심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의 숨겨진 진실은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1%의 소득집중도에 있다.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은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다. 부유층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빈곤해 지는 자체의 추진력

19) 김낙년(2012: 16-17)은 가구주 비중과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그의 연구 상위 5%, 10%의 소득비중이 통계청 가구조사 자료의 상위 10%, 20%와 대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 의해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Bauman(2013: 21-22)의 비유처럼, 불평등이 역사상 최초로 '영구기관(perpetuum mobile)'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분명한 '승자독식의 사회(winner takes all society)'가 되어가고 있다(Hacker & Pierson, 2010).



<그림 8>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추이
출처 : 김낙년 (2012)

3.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정부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부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서 거둔 결실의 대부분이 이미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이다(Bauman, 2013: 12). 경제성장의 과실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자.

기업이 획득한 막대한 수익은 어쩌면 기술의 혁신과 좋은 상품의 개발 등 선도적인 기업 경영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성장의 비밀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낙수효과만 믿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지만, 경제성장의 속도는 오히려 둔화되었고, 빈부격차와 불평등 현상은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친기업적 세제개편이다. 정부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세율 변경의 방법을 통해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었다.²⁰⁾ 경제규모의 확대와 법인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1990년에 8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구성되어 있던 구간이 1991년 1억원 이하, 2008년 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MB 정부는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2012년부터 200억 초과 구간을 신설(세율 22%)하는 획기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율변경은 총 11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91년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한차례 인상(30%→34%)을 제외하면, 모두 법정 세율이 인하된 경우이다(위평량·최이배, 2010: 12).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은 2012년 기준 24.2%로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평균 25.6%)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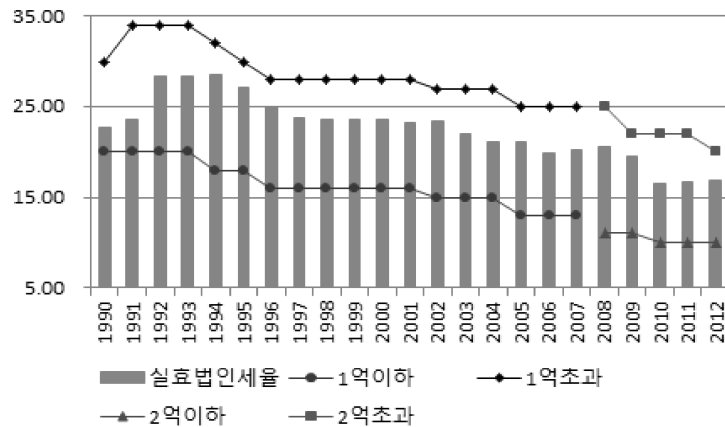
20) 2008~2012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5%, 과세표준액은 32% 정도 증가한 반면, 세금은 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와 각종 세제혜택 덕분이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228).

다. 일본이나 미국의 40.0%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유럽 국가의 대부분도 28.0~33.0%의 법인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230-231).

그러나 여기에 각종 세금감면 조치가 더해지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²¹⁾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과세표준액 대비 총 부담세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실효법인세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5년부터 감소하여, 2002년까지 2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부터 16.0% 대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2년에는 16.8%에 불과하다. 유사한 결과는 위평창·채이배(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2010년에 유가증권거래소시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 중 세전이익이 흑자인 회사(금융회사와 외국국적의 상장사 제외)를 대상으로, 1990~2009년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활용하여,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하였다. 기업의 법정 법인세율과 실효법인세율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199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도 비교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세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²²⁾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확인되는 결과이다. 이은정(2012)도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대부분은 상위 10%의 대기업과 상위 1%의 거대기업에 귀속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 금액이 2억원밖에 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세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한다. 정부는 특정 산업분야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세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의 둔화, 불평등 수준의 강화, 국가채무의 확대 등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현 정부도 투자활성화의 미명 하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식되어야 하는 폭정이다.

21) 법정법인세율과 실효법인세율 사이에는 세무조정과 세액공제의 과정이 존재한다. 전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준비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기부금, 접대비 손금불산입 등이 포함된다. 후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투자세액공제(2005년 기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7%),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3%),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3%), 에너지설비투자 세액공제(7%) 등이 포함된다(위평창·채이배, 2010: 8).

22) 이는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 혹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이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10대 초대형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살펴보면, 평균 실효법인세율(1990-2009)이 산업전체보다 2.6%p, 일반 대기업보다 2.7%p 정도 낮게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2009년 기준 11%), LG 전자(10%) 등의 전자전기 및 통신 장비 업종 거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산업전체 평균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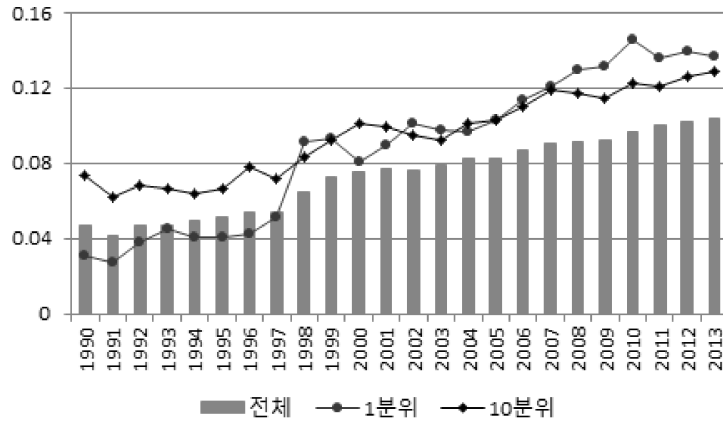


<그림 9> 기업의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과 실효법인세율 추이
 자료 : 위평량 · 채이배 (2010), 국세청 (각년도)

우리나라 거대기업은 정부의 불공정한 감세정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왔다. 그렇다면 상류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체로 조세의 누진성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불평등의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난다 (Stiglitz, 2012/13: 70).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수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0분위 가구의 시장소득 대비 조세부담 비중(사회보험료 포함)의 변화를 살펴보자. 전체 가구의 2013년 평균 조세부담 수준(10.4%)은 1990년(4.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소득 10분위 가구의 2013년 조세 비중(12.8%)도 1990년(7.8%)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1분위 가구의 비중은 대단히 크게 확대되었다(3.1%→13.7%). 문제는 확대 규모와 부담 수준 모두 소득 1분위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비중은, 1998년 이후 평균 수준보다, 2005년 이후 소득 10분위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소득 분위별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강화되고 있다.²³⁾ 유사한 결과는 OECD 국가(2010년 기준)의 소득 계층별 총 임금소득 대비 조세부담 비율의 격차를 비교한 김교성(2013: 52)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치는 6.7%로 일본(5.7%), 영국(6.7%)과 더불어 그 격차가 매우 적은 국가에 해당된다.²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율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사적 영역에 관한 특권화의 결과, 우리 사회 부유층의 소득 점유율은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3)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2011년 감세액(21조 3,000억) 중 소득세가 9조 4,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2조 3,000억원에 이른다는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홍현호, 2012: 517).

24) 격차가 큰 국가군에는 핀란드(13.8%)와 스웨덴(12.9%)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0>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시장소득 대비 조세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정부의 활동이 불평등 심화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자본주의 불평등 확대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인 시장소득에 기초하여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시장소득 분배의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임금상한제, 최저임금, 임금조정, 고용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부가 상위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결과이다.²⁵⁾ 여기에는 독점적 이윤과 일부 최고경영자들이 받아가는 과도한 보수도 포함된다(Stiglitz, 2012/13: 52). 우리나라 대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 최고경영자들의 대폭적으로 인상된 보수로 회귀되었다.²⁶⁾ 최근 5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주요 상장사 등기임원들에 대한 개별 보수액이 공개되었는데, 연봉과 배당금을 합산하여 순위로 매겨보면, 이건희(삼성전자 회장, 1,078억 6,400만원), 정몽구(현대차그룹 회장, 635억 400만원), 최태원(SK그룹 회장, 586억 7천만원), 구본무(LG그룹 회장, 236억 300만원),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399억 1,100만원) 순으로 나타난다(한겨레 21, 2014: 40). 총 2,935억 5,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2014년 기준, 2조 5,239천억원)의 약 11.6%에 해당되며, 주거급여(7,284억원)의 40.2%, 자활지원사업(5,418억원)의 54.1%, 교육급여(1,110억원)의 264%, 긴급복지지원사업(499억)의 588%에 이르는 금액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중 8.7천 가구, 14만명의 1년 생계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경영자는 엄청난 보수에 대해 회사의 수익창출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파괴된 시장원리를 철저히 방관하고 있다(Hacker & Pierson, 2010/12: 102-104).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tiglitz, 2012/13: 141). 시장의 규칙(rule of game)도 공정하지 않지만,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면, 패자는 승복하기 어렵고, 승부 자체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며,²⁷⁾ 가장 시급하게 '정상화'가 요구되는 지점이

25) 지대추구의 개념은 원래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헨리 조지(1997)는 그의 유명한 저작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생산성이 증가해도 지대(혹은 임대료)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낮게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용어는 독점 이윤 혹은 독점 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얻는 소득'을 의미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그 개념이 '부를 창출한 대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는 행위'로 확대되었다(Stiglitz, 2012/13: 121; 130).

26) 구속 상태이거나 회사는 적자인데도 거액의 연봉을 받아간 최고경영자도 존재한다.

다.

최저임금제나 임금조정과 같은 노동규제는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임금격차와 불평등 수준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의 고용보호 제도는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삶을 보호함으로써, 소득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황선자·이철, 2007: 4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그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Martin(2007)은 정규직 근로자의 세후 평균임금 대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총 21개 OECD 국가(2006년 평균 44%)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2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 수준은 아일랜드(60%)이며, 터키(29%), 일본(30%), 멕시코(31%)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²⁸⁾ 한편 임금조정은 소득격차를 축소하려는 국가의 투입(input) 측면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체로 중앙화된 임금교섭(collective wage bargaining)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업과 자본의 다양한 압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르딕 국가들(평균 임금분산 수준 2.44)은 금융자본화에 따른 자본의 이동가능성 증대와 세계적 경제위기 등의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저항하는 복지정치(politics against market)를 수행해 왔다(김교성·김성욱, 2011: 139, 146).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인 미국(5.01)과 우리나라(4.73)의 임금분산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4a; 부록 <그림 4> 참고). 임금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박약하지만, 약화된 노동조합의 파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

4.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 책임의 한계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한 결과이다. 시장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자원을 좀 더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일은 정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정부의 복지확대 노력을 사회지출 수준으로 규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수월성과 명쾌함 측면에서 대안을 찾기 어렵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14% (OECD 기준) 혹은 10.35%(고경환 외, 20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0년(2.82%, 3.13%)에 비해 크게 성장한 규모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평균 21.8%) 중 복지의 후진국이라고 평가되는 미국(19.6%)과 일본(2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가입한 이스라엘(15.8%), 칠레(10.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OECD, 2014b).³⁰⁾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수준이 낙후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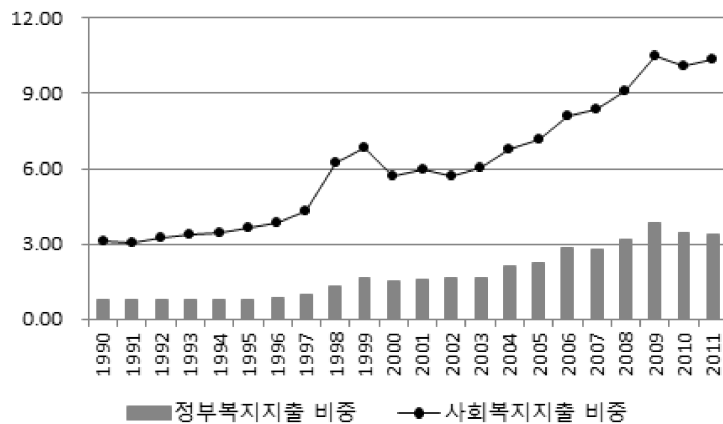
27) 이외에도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의 탐욕적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순환 출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관찰된다.

28) 여기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가 208만명(2013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11.8%)에 이르고 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94-95).

29)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은 1989년에 최고 수준(19.8%)까지 확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절반 수준(9.8%)으로 축소되었다(통계청, 2014; 부록의 <그림 5> 참고). 단체교섭의 적용범위도 14%밖에 되지 않아, 두 수치 모두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신광영, 2013: 80-82).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았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의 수익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2009~2011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³¹⁾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혜택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다.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급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³²⁾ 사회보험은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연기된 임금에 불과하다. 아래의 <그림 11>은 총 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보험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3.36%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3년(2009~2011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쟁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형편없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림 11>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정부 복지지출 비중 추이
자료 : 고경환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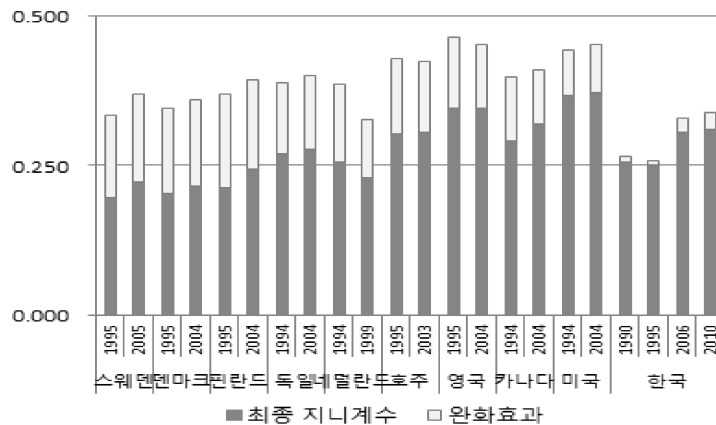
복지확대의 노력으로 인해 사회적 위계 집단 간 격차가 얼마간 축소되기는 했다(부록의 <그림 6> 참고).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³³⁾ 시장소득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던 북유럽과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누진적 조세체계와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에서, 크게 축소된 불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의 나라들도 일정 수준(평균 22.7%)의 완화효과를 가지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의 완화 수준만 한자리 수(1990년대 3.42%, 2000년대 7.92%)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복지급여의 확대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면, 일반 국민들은 개인 책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충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삶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30) 모든 국가에 대한 수치는 OECD(2014b)의 2011년 값이며, 일본만 2010년 값이다.

31) MB 정부는 사회부조 수급자 규모의 축소, 일시적이고 잔여적인 급여의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혹은 민영화의 작업을 통해 복지국가의 '프로그램적' 축소를 일부 단행하였다. 물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체계적' 축소의 모습도 관찰된다(김교성·김성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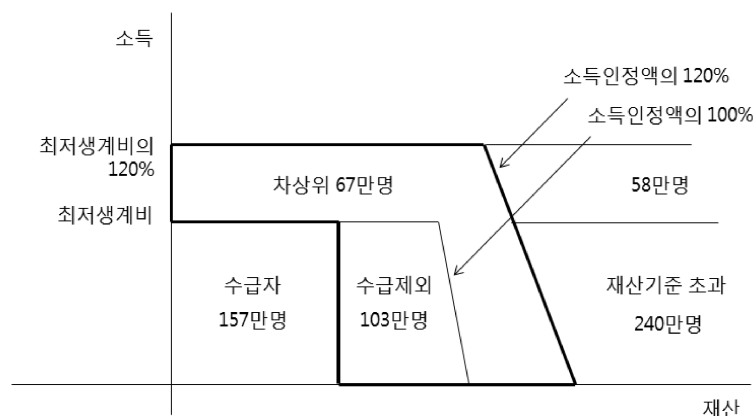
32)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정부의 복지급여를 제공받는 사람들도 이미 세금의 납부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소득세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다.

33) 자료의 한계로 인해 소득 10분위 배율이 아닌 지니계수의 효과를 제시한다.



<그림 12>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
출처 : Immervoll & Richardson (2011), 자료: 통계청 (각년도)

낮은 재분배 효과의 원인은 낮은 급여수준과 제도의 미성숙 등 다양한 이슈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넓은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용대상 측면에서 배제되어 있는 인구 집단의 규모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 관찰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연명(2010)에 의하면, 우리 사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임금근로자 중 개별 보험 미가입자 수)는 각각 28.8%, 3.6%, 41.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미가입률(각각 50.9%, 6.7%, 57.3%)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하다. 제도의 수급대상은 2010년 현재 157만명에 불과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탈락된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각각 103만명과 67만명에 이르며, 재산기준이 초과된 사람도 240만명 가량 존재한다. 따라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약 400만명(전체 인구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태진 외, 2012: 5-6). 우리나라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도 사회보장제도 정비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출처 : 이태진 외 (2012: 6)

IV. 정책적 대안(?)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부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활동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Hacker & Pierson, 2010/12: 71-72).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누진세나 복지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니면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 확대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교육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소위 'SBTC'(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지식경제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선진 기술의 부재가 고학력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를 분리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Hacker & Pierson(2010/12: 61-69)는 집단(동일한 학력 혹은 기능 소유자들 간) 내 불평등의 논리와 국가 간 비교의 방식을 통해, SBTC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귀띔하고 있다

1. 누진적 조세체계 구축

사회적 타살 문제의 해답은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그 책임은 수익을 독점한 기업과 부자감세에 열중한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누진적 조세체계의 확립 측면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지불하는 세금의 절대 양은 분명 확대되었고,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엄청난 소득에 부과되는 전반적인 세율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정부는 재벌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지확대에 필요한 국가의 자원을 축소시켰다.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수준도 심각하게 증가하여, 미래 복지확충의 기회마저 옥죄고 있다(김교성·김성욱, 2012).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누진적인 세율의 적용을 통해 그들의 남아도는 자원을 징수하고, 그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자.

현 소득세도 상류층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상위층의 사람들도 최고 세율에 간신히 걸쳐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크게 5개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세율은 6~38%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이 8,900만원인 사람과 3억원인 사람의 세율이 35%로 동일하다.³⁴⁾ 소득은 4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최고 소득층에 대한 보다 누진적인 세율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홍헌호(2012: 521-522)는 표준구간에 소득 1.2억원의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보다 더 높은 42%의 최고 세율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법인세도 더욱 누진적이고 많은 조세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순이익 규모가 200억인 중소기업과 40조인 삼성전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분화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홍헌호(2012: 525-526)는 현행

34) 1995년까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구간(6,400만원 초과)의 세율은 45%였다. 이후 최고구간의 세율은 1996~2001년 40%, 2002~2004년 36%, 2005~2011년 35%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구간 기준액이 1996년 8,000만원 초과로, 2008년 8,8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이후, 최고구간 기준액은 3억원 초과이며, 세율은 38%이다.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100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세표준 2억~100억원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세율인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억~1,000억에 대해서는 감세 이전 세율인 25%를 적용하며, 1,0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더 높은 27%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과 세율조정을 통해 정부는 100~1,000억원 구간과 1,000억원 초과 구간에 포함되는 기업들로부터 각각 약 1조 7,808억원과 5조 9,129억원의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다(2015년 추정액).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표 4>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 안

(단위: 만원, %)

		현행		개혁 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	1	1,200 이하	6	1,200 이하	6
	2	1,200~4,600	15	1,200~4,600	15
	3	4,600~8,800	24	4,600~8,800	24
	4	8,800~30,000	35	8,800~12,000	35
	5	30,000 초과	38	12,000 초과	42
법인세	1	20,000 이하	10	20,000 이하	10
	2	20,000~2,000,000	20	20,000~1,000,000	22
	3	2,000,000 초과	22	1,000,000~10,000,000	25
	4	-	-	10,000,000 초과	27

출처 : 홍헌호 (2012: 523, 526)에서 재구성

한국복지패널의 제2차 복지인식조사(2010년) 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 중 다수(68.6%)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41.4%)가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1차 조사(2006년)의 결과에 비해, 전자(71.5%)는 일부 감소한 것이고, 후자(37.4%)는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김교성, 2013: 49). 복지증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식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소위 '로빈훗' 방식으로 불리는 부자증세의 방식과 '돼지저금통' 방식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증세의 방식이다. 사회복지계에서는 대체로 후자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의 방식은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아 부담자 집단의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고, 복지확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축소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낙인주의적이고 잔여주의적인 복지로 귀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기초한다. 반면 후자의 방식은 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복지급여 확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증세의 기본 방향은 조세 부담의 주요 주체를 부유층으로 한정하느냐 혹은 누구나 부담하는 방식이냐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두 함께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많이 내는 누진적 체계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에서 배분되는 자원에 대한 사후적 재분배 기능에 몰두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정부는 분명히 시장소득의 분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과도한 소득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시장³⁵⁾ 최저임금, 임금 조정,

35) 정부는 환율 및 기준금리 조정, 공적자금 및 보조금 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워크아웃)과 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금융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Hacker & Pierson(2010/12: 78)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정부의 금융혁신 중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현금자동지급기(ATM)밖에 없다고 조롱하고 있다.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복구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대임금이나 중앙교섭, 최저임금제 등의 실행을 통해 임금분산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김교성·김성욱, 2011).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보다 많은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포기하는 대신 좋은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식당 등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유럽의 구직자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한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얼마를 받던 상관없이 없는 것은 아니다(Judt, 2010/11: 85).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노동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들의 보수는 한 번도 그 상승세가 꺾인 적이 없었다. 엄청난 수준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일자리 삭감과 구조조정, 그리고 회계조작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소득세와 이자를 회피하기 위해 이연지급제(deferred compensation)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Hacker & Pierson, 2010/122: 102-105). 최고경영자에 대한 임금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수준을 노동자 최저임금 혹은 평균임금의 몇 배로 설정하건, 최고 보수에 제한을 두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고 기준을 합의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³⁶⁾

2. 보편적 복지체계 확립

정부는 복지급여의 확대를 통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부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³⁷⁾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급대상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 발굴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사전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데 있다.³⁸⁾ 급여대상 중 전년도 지원 대상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신규 대상자 혹은 사각지대 발굴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선우, 2011). 그러나 보니 예산 집행율은 매년 감소하고(2010년 87.2%,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 집행된 금액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2010년 505억원, 2011년 457억원, 2012년 346억원). 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사후감사를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노

36) 노동당은 2012년 총선에서 CEO 임금상한제 도입 공약을 통해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100배(당시 11억 4,866만원), 공기업 임원은 10배(1억 1,486배)를 제안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3년 기업 임원과 직원의 최저임금 격차를 1:12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65%가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미국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을 전체 평균 소득의 35배로 제한하는 조세개혁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한겨레 21, 2014).

37)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그리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연계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8)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 중단이나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만한 사례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보수적 운영을 초래하게 된다.

대명, 2009). 각종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데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축소하는 편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청주의 복지시스템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충원이 요구된다.³⁹⁾

더욱 확실한 대안은 보편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소수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광범위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이미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Korpi & Palme, 1998).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대폭 상승시켜, '수당'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민권적 급여체계의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분을 삭제하여—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운영하면,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의 문제와 —소득파악 문제로 인해— 왜곡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운영하여야 할 기금의 규모도 크게 축소된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질병수당 혹은 상병수당의 도입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철폐와 재산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수급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면,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무기여 방식의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의 새로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김교성, 2013: 46-47). 다수의 연구와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V. 결론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부를 위한 부를 추구한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세계화, 금융화, 수출과 금융주도의 성장은 대기업의 자본축적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어, 기업의 사내유보율과 저축률, 그리고 상위층의 소득 점유율 등은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변용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축소되었지만, 임금격차, 최저임금, 저축률과 가계 부채, 빈곤율, 노인빈곤율,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노동조합 가입율, 복지지출, 불평등 완화 효과, 출산율, 범죄율, 강력 범죄율, 자살율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산업재해, 자영업 비중, 대학 등록금, 교통사고 등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⁴⁰⁾ 그런데도 아직도

39) 사회복지 제도는 확대되었지만, 인력충원이 지체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폭증했다. 그로인해 2013년에 4명의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원이 필요한 다른 이유기도 하다. 정부는 관참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40)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45.9%가 비정규직이며, 노동시간은 연간 2,090시간으로 OECD 국가(평균 1,776시간)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도 10만명 당 20.99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겨레 신문, 2014. 5. 15).

자유로운 기업, 민간, 효율, 경쟁, 이윤, 성장 등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을 철저하게 추종하며 추악한 기업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난폭한 기업이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로 등장한다. 또한 승자독식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⁴¹⁾ 우리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 감세에 몰두하고, 낮은 수준의 복지예산을 지출하며, 확대되는 소득 불평등의 현상을 무시하고, 아직도 복지에 낙인을 부여하며 복지 때문에 국가가 망한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구조를 만든 정부, 정부 관료, 정치권이 기업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념적 지향을 떠나,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어떻게 자본과 시장의 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대로 자본은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Hacker & Pierson, 2010).⁴²⁾

그러나 기업과 정부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한 승자독식과 성과중심주의, 경쟁만을 강조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가 사회적 타살의 범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동경하고 찬미한다. 그들 중 대다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부귀와 권세를 찬미하고 숭배하는 성향은 우리의 도덕적 감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원인이다. 우리의 도덕적 감성은 실제로 타락했다(Judt, 2010/11: 34). 이러한 현실에 대해 Bauman(2013: 46-47)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방에 탐욕, 경쟁, 이기심, 부패가 편재하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심과 끊임없는 경계를 조연하고 찬양하는 현실. 사람들은 혼자서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이러한 현실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없으며, 그러한 현실을 얼버무리거나 무시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의도적이건 우연이건 간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세계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행동양식을 따르는 것 외에 거의 아무런 대안도 없게 된다. ...(중략)... 평균인들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옳은 결론이다. 그리고는 이런 종류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결론짓는다. 잘못된 결론이다.

우리 모두는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에 순응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Bauman(2013)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회유한다. 변화와 저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쟁 대신 우호적 '협력'과 '연대'를 선택하자. 개인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 가치관을 새롭게 재구조화 시키자. 친절한 협력, 상호 관계, 공유, 상호 신뢰, 인정, 존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생에 대한 인간적인 갈망에 기대해 보자. 적절한 자원의 분배와 빈부격차의 해소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자. 그리고 누진적인 조세구조와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원이 배분되면, 분수경제이론(trickle-up

41)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 인신의 '안전'마저 담보해주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변화에 대한 공포, 쇠락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공포를 가져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상호의존과 신뢰의 관계를 무너트린다(Judt, 2010/11: 20; 김교성, 2013: 40 재인용).

42) 우리 사회는 상위 1%에만 해당되는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싶어도, 여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야당의원까지 나서 '세금 폭탄' 운운하며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economics)의 주장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모든 계층이, 심지어는 상위 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Stiglitz, 2012/13: 89).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한 국가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복지국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평가도 있다(김연명, 2004). 그러나 실제 모습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람살기 힘든 나라, 돈이 지배하는 나라,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에 불과하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낙수이론 등의 부적절한 논거에 기초하여 성장에만 집착하지 말자. 아직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한쪽도 주어지지 않을 허구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경제성장이 원래의 기대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분배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진중하게 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복지와 성장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통합된 사회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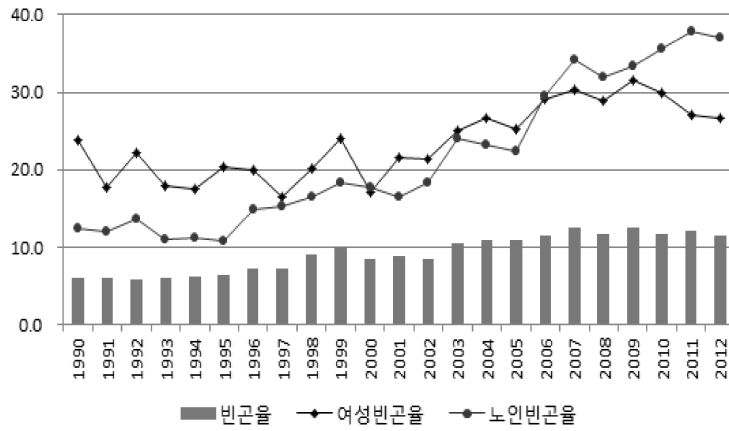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고경환·장영식·김현아·김진욱·이정우·강지원·정영애. (2012).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
- 김교성. (2013).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40(1): 31-39.
- 김교성·김성욱. (2012).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정책, 39(3): 117-149.
- 김교성·김성욱. (2011).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18(3): 129-164.
-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 김상헌. (201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김승식. (2013).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서울: 끌리는 책.
- 김연명. (2004).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복지체제 유형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유형화의 가능성. 사회복지정책, 20: 133-154.
- 김연명. (2010).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37(4): 155-179.
- 노대명. (2009).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보건복지포럼(2009.2).
- 노용환. (2008).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우리나라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경제학 연구, 54(3): 177-200.
- 노용환. (2007). 자살위험의 미시적 결정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1): 41-58.
- 박종규. (2013a).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 박종규. (2013b).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주간 금융브리프, 23(16): 12-13.
- 반정호. (2011). OECD 회원국의 사회통합과 자살률. 월간 노동리뷰, 12: 97-100.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파주: 도서출판 동녘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신동준. (2012).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사회통합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지상주의의 효과. 범죄와 비행, 12: 85-102.
- 여경훈. (2012).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태인 외. 리셋 코리아.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pp.116-141).
- 우혜경·조영태. (2013). 빈곤의 동태와 자살생각. 보건과 사회과학. 34: 5-35.
- 윤우석. (2011). 실업과 소득격차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 검증: 1995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 분석. 한국공안생정학회보, 42: 153-185.
- 은희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이상이. (2011).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복지국가 증세운동. 복지국가소사이어티(편).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서울: 밈 (128-152).
- 이선우. (2011). 빈곤예방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2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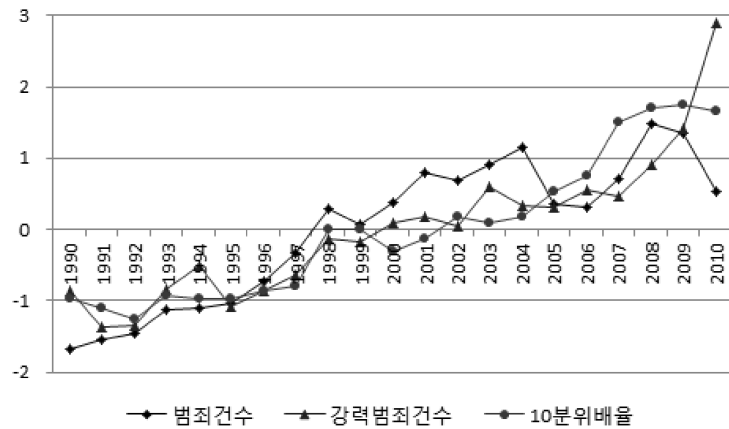
- 이은정. (2011).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의 귀착효과. 경제개혁연구소.
- 이태진·김상균·홍경준·석재은·구인화·이선우·강신욱·이소정·여유진·강석훈·강혜규·김교성·김종숙·김진우·류만희·박찬임·손병돈·신영석·양병찬·이병희·이인재·전병목·정원오·채창균·최현수·박형준·박은경·김상은·김정은. (2012).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신동균. (2010). 소득 양극화와 자살. 사회보장연구, 26(2): 1-21.
- 지주형. (2013).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 위평량·채이배. (2010). 상장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 장기추세와 산업별·기업규모별 비교. 경제개혁연구소.
- 통계청. (각년도). KOSIS.
- 통계청. (2008, 2010, 2012). 사회조사보고서.
- 한겨레 21. (2014). 화가 난다 회장님의 연봉. (1006호, 2014.04.14.).
- 한국은행. (각년도). ECOS.
- 헨리 조지. (1997). Progress and Poverty. 김윤상(역).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 황성자·이철. (2007). 세계화와 제도: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 연구총서.
- 홍헌호. (2012). 부자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 정태인 외. 리셋 코리아.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pp.512-532).
- Atkinson, A. B. (2005). Top Incomes in the UK over the 20th Centur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68(2): 325-343.
- Bauman, Z.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Benefit Us All?, Cambridge: Polity Press. 안규남(역).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파주: 동녘.
- Hacker, J. S. & Pierson, P. (2010). Winner Take All Politics: How Washington Made the Rich Richer & Turned Its Back on the Middle Class,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조자현(역). (2012). 승자독식의 정치학: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파주: 21세기 북스.
- Immervoll, H. & Richardson, L. (2011). Redistribution Policy and Inequality Reduction in OECD Countries: What Has Changed in Two Decades? OECD Discussion Paper No. 6030.
- OECD. (2013). Health Data.
- OECD. (2014a). Labor Statistics. www.oecd.stat
- OECD. (2014b). SOCX Dataset.
- Judt, T. (2010). Ill Fares the Land, London: New York: Penguin Group. 김일년(역). (2011).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자유시장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파주: 플래닛.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October): 661-687.
- Martin, J. (2007). The Minimum Wage: Making It Pay. OECD Observer No. 261.
- Moribuchi, C. & Saez, E. (2008). The Evolution of Income Concentration in Japan, 1886-2005: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 Statistics, 90(4): 713-734.
- Piketty, T. (2003). Income Inequality in France, 1901-199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5(5): 1004-1024.
- Piketty, T. & Saez, E.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1-39.
- Roine, J. & Waldenström, D. (2008).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200-205.
- Saez, E. & Veall, M. R. (2005). The Evolution of High Incomes in Northern America: Lessons from Canadian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5(3): 831-849.
- Stiglitz, J.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Norton. 이순희(역). (2013). 불평등의 대가. 파주: 열린책들
- US Dept. of Labor. (2012).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 Trends, 2011*. Division of International Labor Comparisons.
- Wilkinson, R. & Pickett, K. (2010).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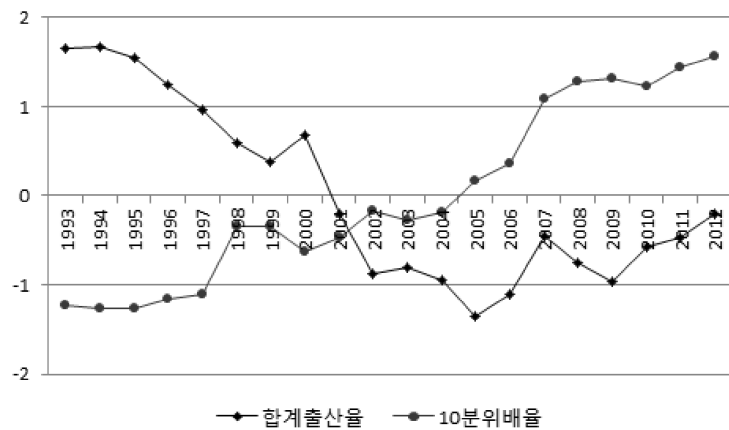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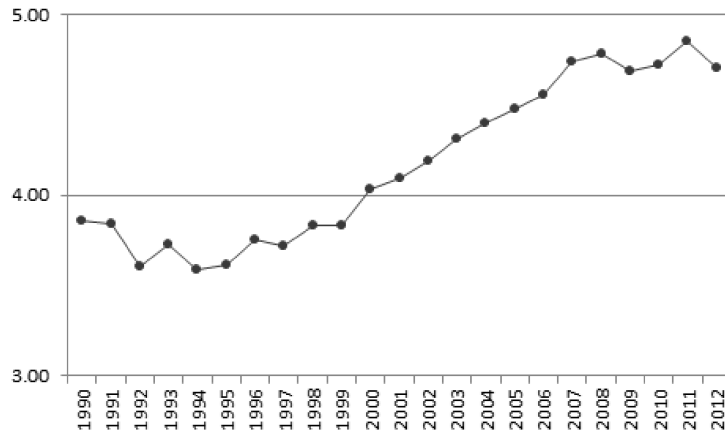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전체 빈곤율과 여성, 노인 빈곤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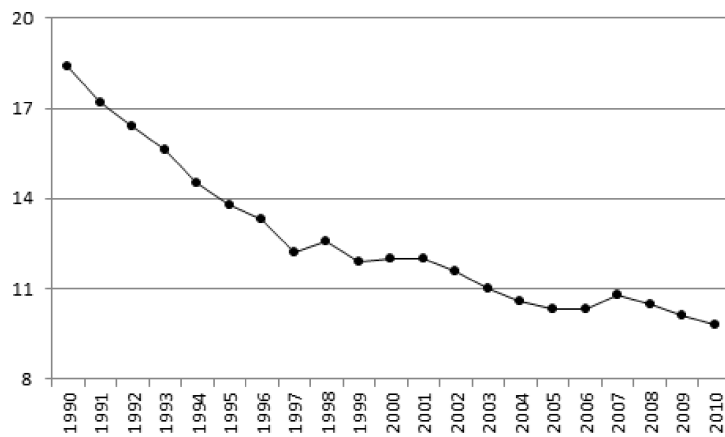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범죄건수와 소득 10분위 배율
자료: 통계청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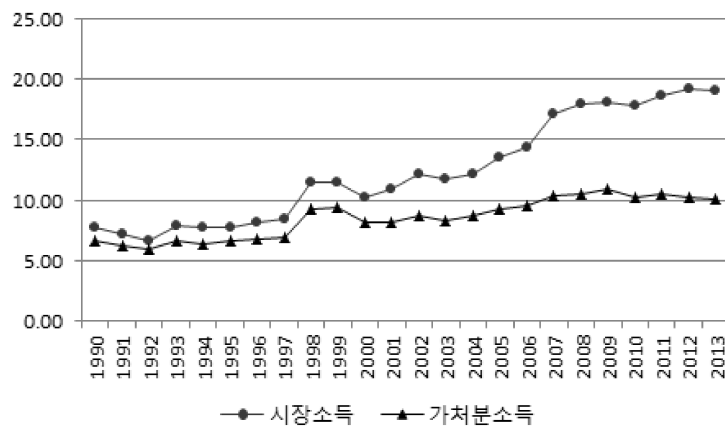
<부록 그림 3> 합계출산율과 소득 10분위 배율
자료: 통계청 (각년도)



<부록 그림 4> 임금분산 추이
 자료: OECD (2014a)



<부록 그림 5>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각년도)



<부록 그림 6>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
 자료: 통계청 (각년도)